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고 제2026-87호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8.07. ~ 2026.08.20.(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채납자 주소
1	박대환	1986.00.11.	채권(예금)	₩12,676,93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 1길
2	강승규	1972.00.03.	채권(예금)	₩1,042,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	강석건	1970.00.22.	채권(예금)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 1길
4	서민원	1961.00.21.	채권(예금)	₩17,700,000	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5	채수진	1958.00.14.	채권(예금)	₩6,3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별신당길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